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25 호

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
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시행령 제100조의2,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【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】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01월 1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공 고 명 : 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
2. 시행기관 :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
3. 접수기간 : 2021.01.12.(화) ~ 2021.01.15.(금)
4. 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
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3-1
 - 나. 수행 과업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
 - 다. 용역 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2023. 01. (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 - 라. 안전점검 주요내용
 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1항1조.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
 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(초기점검)
 -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

건설공사 종류	정기안전점검 시기			횟수
	1차	2차	3차	
건축물	기초공사 시공시 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공사 초·중 기 단계 시공시	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	3
10미터 이상의 굴착 공사	가시설공사 및 기 초공사 시공시(콘 크리트 타설전)	되메우기 완료 후		2
폭발물 사용공사	총 공종의 초·중기 단계 시공시	총 공종의 말기단계 시공시		2

천공기 설치	천공기 설치 운용 시	천공기 해체 시		2
항타항발기 설치	항타항발기 설치 운용시	항타항발기 해체 시		2
타워크레인 설치	타워크레인 설치 및 운용시	타워크레인 해체 시		2
5m 이상 거푸집 동바리	총 공종의 초·중 기단계 시공시	총 공종의 말기단계 시공시		2
2m 이상 흙막이지보공	흙막이가시설 설치시	흙막이가시설 해체시		2
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	총 공종의 초·중 기단계 시공시	총 공종의 말기단계 시공시		2
초기점검	준공직전			1

- 국토부고시 제2020-47(2020.01.23)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름.

5. 안전점검 계상금액 : 94,687,172원(부가가치세 포함)

6. 참가자격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)

- 1)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
- 2)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

7. 제출서류

가. 제출기한 : 2021.01.12.(화) ~ 2021.01.15.(금)

나.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

(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본관 6층 건축과)

다. 제출서류

- (붙임4)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
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가격(입찰)제안서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-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(참여기술인 표시)

- 중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
(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

라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원본 및 스캔본 제출)

※ 등기우편의 경우,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.

※ 제출서류 PDF 파일 이메일 송부(wlsghtjd3275@junggu.seoul.kr)

8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

가. 평가방법 : 국토부고시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」 준용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을 적용

나. 업체선정

- 1)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
- 2)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
- 3)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

9. 기타사항

- 가.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.
- 다. “가”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.
- 라.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.
- 마.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.
- 바.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.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아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.